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지방세기본법 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통합하는 개정규정의 시행 시기가 2024년 1월 1일로 연기되고, 세무사법 상 세무대리업무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고액체납액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기준금액 산정 시 제외하는 금액에 대한 용어를 가산금으로 변경(안 제3조제2항제4호)
- 나.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규정에서 공인회계사 관련 세무사법 인용 문구를 변경(안 제9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세무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
 - (1) 입법예고(2022. 6. 9. ~ 6. 29.) 결과: 의견없음
 - (2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첨부
 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도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(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”을 “(법 제2조제1항제24호에 따른 가산금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”를 “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(<u>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</u>는 제외한다)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(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고액체납액"이라 한다)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9조(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·해촉 등)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, 세무사, 「<u>세무사법</u>」 제20조의 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</p>	<p>제3조(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(<u>법 제2조제1항제24호에 따</u> <u>른 가산금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·해촉 등) ① ----- ----- ----- 「<u>세무사법</u>」에 따 <u>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</u> <u>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</u> ----- -----</p>

(이하 "선정 대리인"이라 한다)
으로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~ ⑨ (생략)

-----.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⑨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본문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지방세기본법 상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 관련 조문을 통합하는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 변경에 따른 개정 및 세무사법 상 공인회계사 관련 용어 변경에 따른 개정이므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

4. 작성자 : 재무국 세제과 송유니(2133-3357)